파주시 월롱면 공고 제2026-79호

월롱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연장 공고(2차)

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월롱면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**모집기간**

(기존) 2026년 10월 26일 ~ 2026년 11월 25일

(연장) 2026년 11월 26일 ~ 2026년 12월 4일 (18시까지 시간 엄수)

2. **접수장소** :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

3. **모집인원** : 30~50명 이내

▪ **(모집분야)** 개인공개모집(60%이상), 해당 읍면동 소재 기관·단체 추천모집(40%이하)

4. **자격요건**

▪ **공고일 현재**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, **주민자치교육 6시간*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.**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* 경기도평생학습포털(https://www.gseek.kr/)에서 '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' 이수시, 사전교육 6시간 수료 인정

- **월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**
- **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월롱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**
- **월롱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* 등에 속하며, 월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**

※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*** 기관·단체의 인정범위**

구 분	범 위
기 관	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
단 체	· 직능단체 : 각 읍면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관, 회원명부, 회의록 등을 근거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· 공공단체 :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수행하는 법인단체

※ 그 밖의 단체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모집완료 후 추첨운영위원회 심의 예정

5. **위원의 임기** : 위촉일부터 2028.12.31.까지

6. **신청방법** :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**방문접수**(평일 근무시간 내 9시~18시까지 제출) / 또는 **이메일 접수**(khy16@korea.kr/스캔본 제출(자필서명 필수))

7. **제출서류** : 신청서, 추천서(단체추천)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(아래 표 참조)

※ 신청서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파주시 홈페이지 '고시공고'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구 분	자격에 따른 증빙서류
공통	1.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▶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기준 주소 확인용) 2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·면·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▶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
단체추천 모집분야	해당 지역 소재 학교, 기관, 단체※에 소속된 사람 ▶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활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'단체'의 경우 직능단체/공공단체 확인 서류 필요 ex) 정관, 회의록, 단체회원명부, 6개월 이상 활동 실적 증빙서류

8. **선정방법** : 신청자격(개인 및 단체분야) 요건 적정 여부에 대해 추첨 운영위원회 심의 후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수료자 중 공개 추첨

위원신청(접수) ▸ **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** ▸ 공개추첨 ▸ 위원 선정

※ 공개추첨일 : 2026년 12월(예정) / 추첨일 별도 공지(누구나 참관 가능)

9. **주민자치 교육안내**

▪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(6시간)을 사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원 공개추첨 자격이 주어집니다.(미 이수 시 선정불가)

※ 경기도평생학습포털(https://www.gseek.kr/)에서 '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' 이수시, 사전교육 6시간 수료 인정

10. **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**

▪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

▪ 「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의 의무 수행

11. **결과발표** : 공개추첨 후 개별통지,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

12. 기타사항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의거 개인별, 단체별 특정성별이 60% 이하가 되도록 추첨합니다.

  ※ 모집별 정원 미달 시도 특정 性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첨할 수도 있습니다.

-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.
- **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.**
-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서 제출 당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자격에 **해당했던 자**가 주민등록을 **이전**하는 등 「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통해 규정한 **지원 자격**에 해당 안 될 시 선정 제외

13. **문의사항** : 월롱면 행정복지센터(☎ 940 - 8061)

2026년 11월 26일

월롱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